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- 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. 9. 10.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되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

- 1) 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”을 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”로 개정(제1조, 제3조)
- 2)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, “지역사회복지”를 “지역사회보장”으로 개정(제명 및 제1조 ~ 제3조의2)

#### 나. 조례가 확장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

- 1) 제2조(기능)제1항 각 호 정비
- 2) 제3조(구성)제1항 정비
  - 구성 인원 : “30명 이하”에서 “40명 이하”로 개정
- 3) 제6조(위원의 임기)제1항 내용 추가
  - “다만,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

4) 제9조(회의 등)제5항 신설

- “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

다. 동 단위 협의체 역할 부여 : 제3조의 2제3항 (대상자발굴, 복지자원연계 등)

라.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

- 1) 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정비 :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변경
- 2) 제3조(구성)제3조제3항 : “호선”을 “위원 중에서 호선”으로 변경
- 3) 제3조(구성)의 2 : “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동 사회보장협의체”로 변경

마.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미비조항 신설 : 제7조의 2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[참조 : 복지정책과장, 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(전화 : 820-9541, fax 820-9978, E-mail : nirvana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(<http://www.elis.go.kr/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·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 
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 
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4”를 “「사회보장  
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및  
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, 제6조, 제7조”로 하고,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  
보장협의체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하고, 같은항 제1호  
“지역사회복지계획”을 “지역사회보장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 
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항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
5.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
7.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8.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

제2조제2항 중 “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”을 “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”로 하며, 같은조 제3항 중 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30명 이하”를 “40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사회복지사업법 (이하”법“이라 한다) 제7조의 2제2항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3항 중 “호선하되”를 “위원중에서 호선하되”로 하며, 같은조 제4항 중 “30명 이하”를 “40명 이하”로 하며, 같은조 제5항 중 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6조제2항”로 하며, 같은조 제7항 “지역사회복지”를 “지역사회보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3조의2의 제목 “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하고, 같은조 제1항 “동 복지협의체”를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하며, 같은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
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3. 지역보호체계 구축·운영
4. 그 밖에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”를 “제3조제2항과 제5항”로 하고, “각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”는 “각 협의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① 다만,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“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”을 “각 협의체 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“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”를 “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각 협의체에 출석한”을 “회의에 참석한”으로 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예산”을 “인력 및 예산”으로 “원활한”을 “원활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<u>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</u></p>	<p>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<u>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, 제1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<u>지역사회복지협의체</u>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</u>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, 제6조, 제7조 ----- <u>지역사회보장협의체</u>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<u>지역사회복지협의체</u>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,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</p>	<p>제2조(기능) ① ----- <u>지역사회보장협의체</u>(이하 -----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지역사회복지계획</u>의 수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<u>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li> <li>5. 그 밖에 <u>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</u> 등</li> <li>6. 「<u>긴급복지지원법</u>」 제12조에 따른 <u>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</u>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지역사회보장계획</u> -----</li> <li>2. <u>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</u></li> <li>5. <u>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6. ----- <u>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</u></li> <li>7. 구청장이 <u>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li> <li>8. 그 밖에 <u>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</u> 등</li> </ol>
<p>&lt;신 설&gt;</p>	

현 행	개 정 안
<p>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<u>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</u> 관련기관, 단체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</p>	<p>② ----- <u>사회보장과</u> <u>관련된 서비스를</u> ----- -----.</p>
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<u>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(이하 “실무협의체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<u>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(이하</u> -----.</p>
<p>제3조(구성)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<u>30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40명 이하</u> -----.</p>
<p>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부구청장, 주민생활복지국장, 보건소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	<p>② ----- <u>법 제41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<u>호선하되</u>,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</p>	<p>③ ----- <u>위원</u> <u>중에서 호선하되,</u> ----- -----.</p>
<p>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<u>30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<u>40명 이하</u> ----- -----.</p>
<p>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「<u>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</u>」 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자활고용팀장,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p>	<p>⑤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규칙</u> <u>제6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⑥ &lt;삭제 2009.06.05&gt;</p> <p>⑦ 실무협의체에 <u>지역사회복지</u>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, 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제3조의2(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) ①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<u>동 복지협의체</u>(이하 “동 협의체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<u>동협의체</u>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, <u>당해</u>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	<p>⑥ &lt;삭제 2009.06.05&gt;</p> <p>⑦ ----- <u>지역사회보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⑧ 「<u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</u>」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제3조의2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----- ----- ----- <u>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</u>(이하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</u>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 1. 관할 지역 내의 <u>사회보장</u> 대상자 발굴 2. <u>사회보장</u> 자원 발굴 및 연계 3. <u>지역보호체계</u> 구축·운영 4. 그 밖에 관할 주민의 <u>사회보장</u>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명단 공개) 구청장 또는 대표협 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 및 실무협의 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, 위촉한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위원명단 공개) ----- ----- 제3조제2항과 제5항의 ---- ----- 각 협의체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. <u>다만,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조의 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회의 등) ① ~ ④ (생략) &lt;신 설&gt;</p>	<p>제9조(회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회의록) ① (생 략) 1. ~ 4. (생 략)</p> <p>5. 그 밖에 <u>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</u>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<u>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4조(회의 수당) <u>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·관계인</u>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5조(협의체 운영지원)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<u>예산</u>을 보조하며, <u>원활한</u>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각 협의체 위원장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<u>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4조(회의 수당) <u>회의에 참석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5조(협의체 운영지원) ----- ----- <u>인력 및 예산을</u> ----- <u>원활한</u> ----- -----.</p>